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검토보고서

2024. 9. 2.(월)

순서	검토안건	제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4. 8. 16.
- 회부일 : 2024. 8. 19. (의안번호 : 24-99)

2. 제안이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 및 품질을 향상하고,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내실있는 검증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안 제2조)
- 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3조)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10조~제1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입법예고 : 2024. 7. 11. ~ 7. 31.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5. 검토보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 및 품질을 향상하고,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내실있는 검증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추진배경: 최근 연속적인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기존 조례안에 현실성 부재에 따른 개정 필요함.
 - 정자교(분당) 붕괴 사고('24. 4.) / 도림보도육교 처짐 사고('23. 1.)
 - 「건설기술진흥법」상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설계심의 의무에 따라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계 적정성 검증 부재.
 - 「시설물안전법」상 진단의무 대상인 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까지 정밀안전 진단 확대 필요.

- 30년 경과 시설물 진단 시행 필요.
- 기술자문이나 현장 점검 위주로 위원 활용 및 자문단을 운영하여 기능 체계적 정비·운영을 통해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내실있는 관리체계 마련.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명칭**을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함.
- **제2조(설치 및 기능)** 기술위원회 100억 미만인 구조물 신설에 관한 설계 적정성 심의부터 주요 공법 변경 사항 심의,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범위 검토 등 다각적인 자문과 심의를 담당하고,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중대한 설계 변경에 관한 심의 역시 포함하는 내용임.

< 시 · 구 건설기술심의 전 · 후 비교표 >

구분	규 모	현 재(전)	변 경(후)	비 고
설계 심의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市 건설기술심의위원회	市 건설기술심의위원회	50억 이상 100억 미만 주요공사는 市 심의 유지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	區 기술자문위원회	
진단 심의	1종 시설물	市 건설기술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사업소공단 소관 시설물 → 市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자치구 소관 시설물 → 區 기술자문위원회 	-
	2·3종 시설물			
	비법정 시설물			

- 제3조(구성) 위원회 구성 확대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30 ~1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맡으며, 건설기술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구청 공무원들로 위원이 구성되는 내용임.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를 할 수 있는 내용임.
 - 제10조(소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신설)하고 위원 5~20 명이하로 구성하는 것은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의거 개정된 것으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심의와 자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 강화가 기대되며, 소위원회의 심의가 전체 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자문 및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자문과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별표 1] 관계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 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 제2항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 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 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 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 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6항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⑥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회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발주청의 자문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호 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나목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발주청 소속 직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 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 제3항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 ⑩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 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정한다.